# 对好对各五00色排空处明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박용선 의원 외 12명)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7

발의연월일: 2024. 1. 15.

발 의 자: 박용선·김대일·박규탁

정경민·최덕규·도기욱

이동업·이형식·이춘우

박성만·김창혁·이선희

연규식 의원 (13명)

#### 1. 제안이유

-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되며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를 야기시키고 있음.
- 이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2. 주요내용

가. 도지사가 수행하는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 (안 제3조의2)

- 3. 개정조례안: 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관계법령 발췌: 붙임
  -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6.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의견반영 (예산입법담당관) §예산입법담당관-40 (2024.1.9.)
  -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감사관) §정책기획관-374 (2024.1.9.)
  - 다. 규제 검토의견: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무혁신담당관실) §정책기획관-374 (2024.1.9.)
  - 라. 해당부서 검토의견: 의견없음 (환경정책과) §정책기획관-374 (2024.1.9.)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7.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회용품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체 지원을 통하여"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 4. 다회용기 회수ㆍ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

제6조 중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행 혂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제1조(목적) ----- 1회용품의 줄이기 위한 홍보 및 우수업체 |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 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규정함으로써 --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의2(1회용품 줄이기 지원 사 업)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 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 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 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 을 위한 사업 4. 다회용기 회수 · 세척 재공급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 른 사업을 전문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일부	를 된	관련	기관	또:	느	<u>단</u>
	체에	위탁	할 :	수 있	<u> </u>			
제	6조(덕	민간단	<b></b>	등	지원)			
		경상-	북도	기	방보조	금	관	리
	조례_	<u>_</u>						
			- •					

## 관계법령 발췌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4. 28., 2014. 1. 21.>

1. ~ 4. (생략)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 17. (생략)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수 있다.

- 1.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 2.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3. 28.]

[시행일: 2024. 3. 29.] 제10조의3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2항, 「경상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4조3항에 따른 폐기물의 분리·배출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 추계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1 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예산 추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ㅇ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국고보조 사업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1회용품 사용줄이기 및 다회용품의 사용 장려를 위한 사업 범위를 지정하여 사업 추진 시 향후 지원 사업의 대상규모 및 예산 편성 사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소요 사업비 판단이 곤란하고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4. 작성자 : 환경정책과 지방환경서기 김여진(054-880-3538)



### 경 상 북 도



수신 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환경정책과-426(2024, 1, 5.)호와 관련입니다.
-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6조,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조례(규칙)명	검토의견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li>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품 줄이기 지원사업 추진 등에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추정되나,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기이전에는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형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의견은 적정함.</li> <li>다만,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수반 사항발생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비 재정부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검토 및 예산부서와의 재정부당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검토 및 예산부서와의 재정</li> </ul>

끝.

### 경 상 북 도 지 사

관인생략

주무관 **경오순** 예산충괄담장 **권미속** 예산당당관 전경 2024, 1, 8, 용회반 협조자 시행 예산당당관-385 (2024, 1, 8.) 접수 환경정책과-537 (2024, 1, 8.)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 http://www.gb.go.kr 전화번호 054-880-2153 팩스번호 054-880-2189 / jovi271@korea.kr / 대국민 공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가 최적지입니다.

#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사인	비고
H & M	AL.	
是对型	Mush	
对牙际	123	
7/ 7/ 7/	Month	
2 3-11	Menn	
478	475	
0 9 9	Ang	
8 3	2533	
0 30		
of 4 or	Ah	
(-		

## 발의의원 서명부

(제명 : 경상북도 1회용품 줄이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또는 사인	비고
김창형	TAN	
可对	Firs	
对有为	XA.	